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TDF204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2. 11. 16.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8. 31. 기준</u>	<u>2022. 9. 3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8. 31 기준</u>	<u>2022. 10. 31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8. 31 기준</u>	<u>2022. 10.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8. 31 기준</u>	<u>2022. 10. 31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8. 31 기준</u>	<u>2022. 10. 31 기준</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7)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채권] 가) (생 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생 략)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7)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채권]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현행과 같음)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① ~ ⑤ (생략)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7)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생략)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략)	(7)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현행과 같음)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8. 31. 기준	2022. 9. 30.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8. 31 기준	2022. 10. 31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8. 31 기준	2022. 10. 31 기준